

수원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16가단8045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현창윤, 김희성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박경환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은 원고에게 3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3. 21. 접수 제61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10. 강원 평창군 E 임야 중 1000평을 원고에게, 500평을 F에게 매도하였다. 망인은 2011. 9.경 원고 등에게 위 임야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고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2011. 9. 29. 원고로부터 39,750,000원을 지급받고, F으로부터 2011. 9. 30.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수 및 진입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위 약정을 해제하는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39,75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위 임야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수 및 진입로 개설공사 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F이 피고를 상대로 같은 약정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3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F이 2018. 2. 9. 위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10698)을 선고받고, 위 청구에 대하여 2023. 4. 27.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8다22107)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이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39,750,000원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1.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판결, 2012. 3. 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39,750,000원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별 지 목 록

1. 강원도 평창군 임야 218㎡
2. 강원도 평창군 임야 692㎡

(준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관할)

- 이 상 -

